

보배섬 진도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



2017년 진도군 지방재정공시

(17년 예산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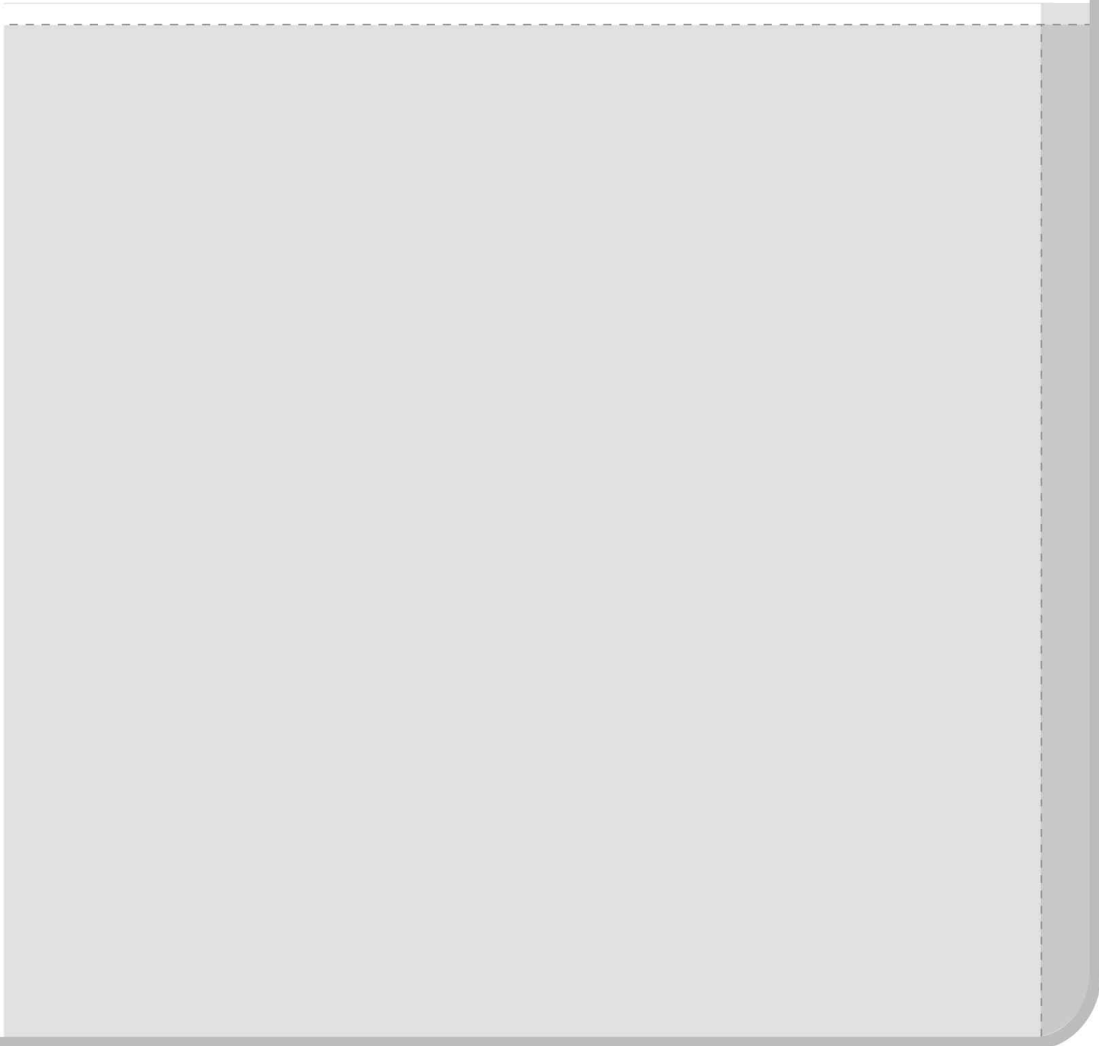


목 차

I.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3
II.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4
III.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6
IV. 진도군 지방재정공시(예산분야)	7
《제1절》 공통공시(예산)의 내용별 작성	9
1. 공통공시 총괄	10
2. 예산규모	11
3. 재정여건	17
4. 재정운용계획	21
V. 기타 공시사항	31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2016년 12월말 기준)	53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56
별첨 3.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59
참고자료 1.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지방재정법 60조)	63
참고자료 2. 용어 해설	73
참고자료 3. 지방재정공시 표준화면 가이드	105



진도군 지방재정 공시 [예산]



1 개념 및 필요성

- 우리군에서 추진한 지난 1년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진도 군민의 이해를 돕고 군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1 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 접근성 제고

☐ 지방재정 공개 관련 국민 제안 창구 운영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국민이 신규 공시항목, 시각화 필요 항목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 상시 운영

☐ 지역주민의 공시 접근성 제고

- 진도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 외에 보도자료 배포 등 재정공시 접근 방법의 다양화 구현

2 재정공시 항목 추가

☐ 통합공시 항목 추가

< '17회계연도 예산기준 통합공시항목 (9개 → 10개) >

구분	확대·조정 공시 항목
조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②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자치단체간 비교유형을 유사 지방자치단체로 분류

- 자치단체간 비교유형을 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로 분류하여 비교 기능 강화

※ (별첨3)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참고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정식서비스 개시('16.5.1.)

-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공개

(참고)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17.2월)

분류	재정공시(16개)	통합공시(10개)
예산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역통합재정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주도[당초] • 통합재정수지[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주도[당초] • 통합재정수지 비율[당초]
재정운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 진도군수

2 공시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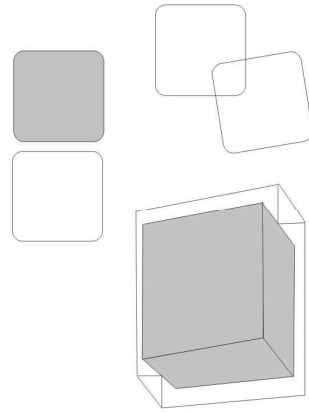
- ☐ 정기공시 : 매년 2월(예산공시), 8월(결산공시) 총 2회 실시
- ☐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3 공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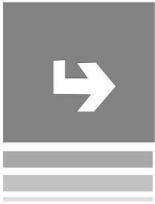
-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정공시 유지
 -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

4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IV. 진도군 지방재정공시



제1절 공통공시(예산)의 내용별 작성	9
1. 공통공시 총괄	10
2. 예산규모	11
3. 재정여건	17
4. 재정운용계획	21

2017년 진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진도군수(인)

- ◆ 우리 군의 '17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2,931억원으로, 전년 예산 2,892억원 대비 39억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070억원)보다 13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78억원,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16억원,
 -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4억원입니다.
- ◆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4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4.25%입니다.
- ◆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588백만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 대비 전체 살림살이 규모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낮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do.go.kr/정부3.0정보공개/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윤선화 (☎ 061-540-3025)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진 도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2,931	2,893	38	3,070	2,874	196
	세 출 예 산	2,931	2,893	38	3,070	2,874	196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개편전 기준)	12.45	10.00	2.45	13.87	13.91	△0.04
	재정자주도[당초] (개편전 기준)	64.25	61.12	3.13	64.52	64.40	0.12
	통합재정수지[당초]	16	15	1	15	7	8
재정운영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4(강원 화천, 전북 장수군, 경북 고령, 경남 산청)

2 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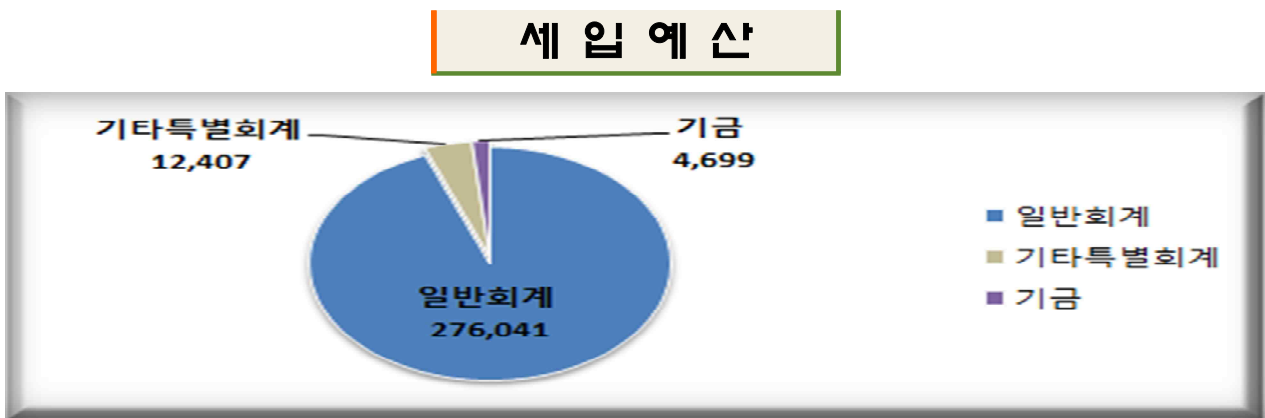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진도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93,147	276,041	12,407	4,69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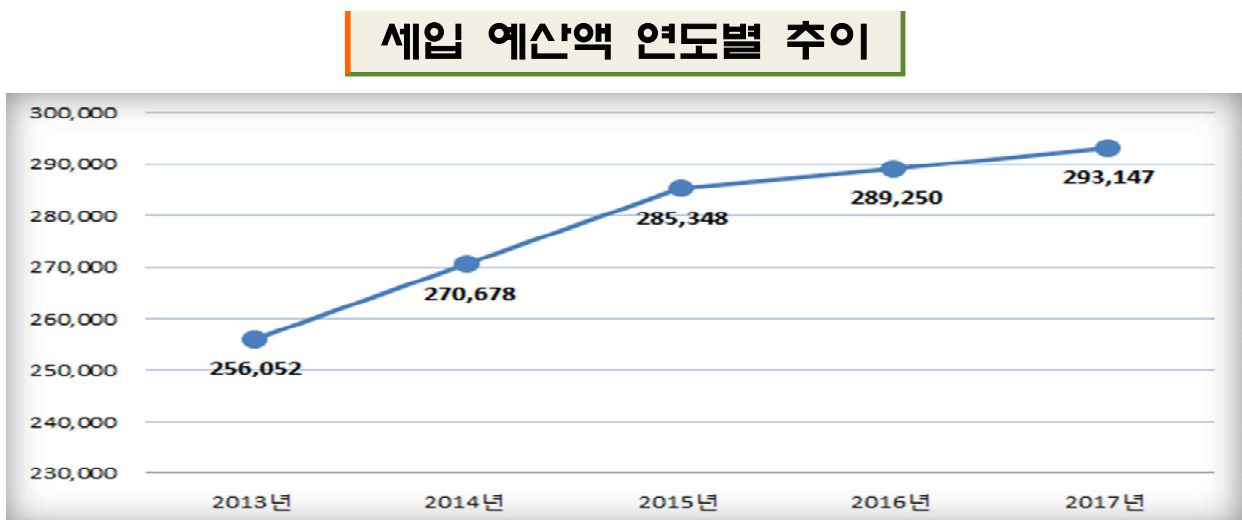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56,052	270,678	285,348	289,250	293,14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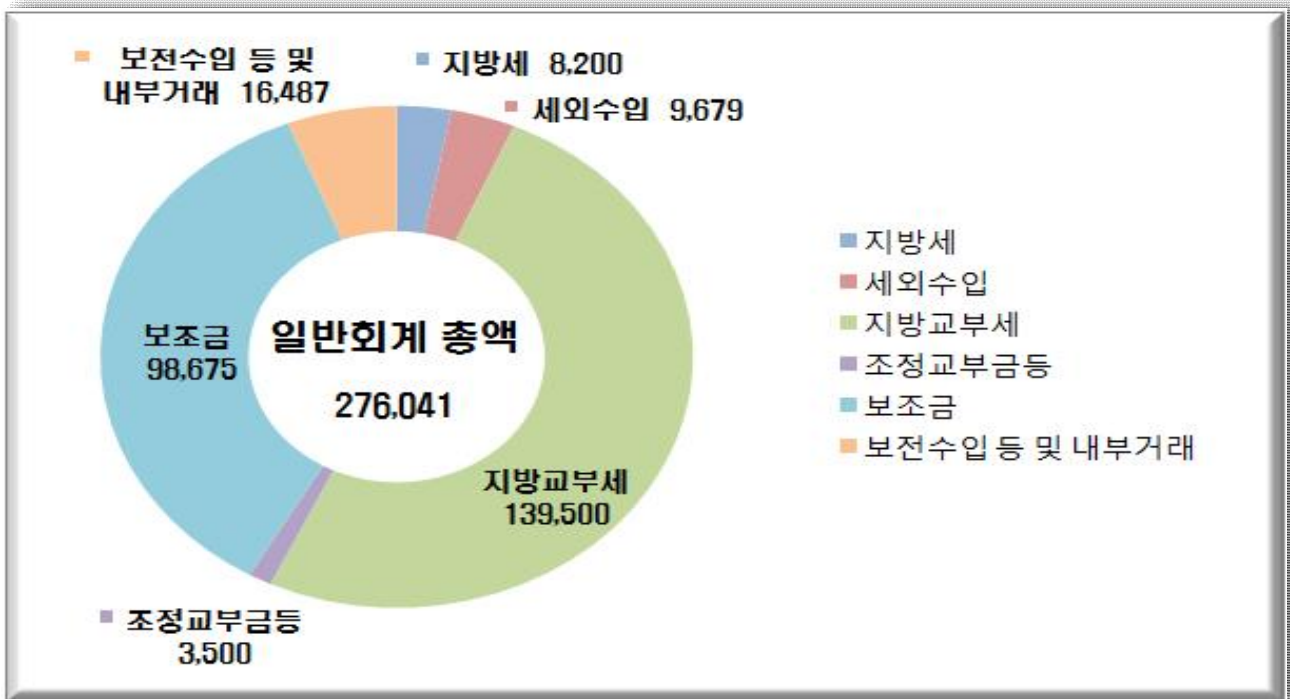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8,537	100	254,733	100	271,468	100	271,886	100	276,041	100
지방세	6,730	2.82	6,590	2.59	6,790	2.50	7,140	2.63	8,200	2.97
세외수입	21,221	8.90	6,666	2.62	5,666	2.09	6,012	2.21	9,679	3.51
지방교부세	119,890	50.26	109,862	43.13	122,619	45.17	137,003	50.39	139,500	50.54
조정교부금 등	1,500	0.63	1,500	0.59	1,500	0.55	2,000	0.74	3,500	1.27
보조금	89,197	37.39	110,608	43.42	121,893	44.90	105,705	38.88	98,675	35.7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19,508	7.66	13,000	4.79	14,026	5.16	16,487	5.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 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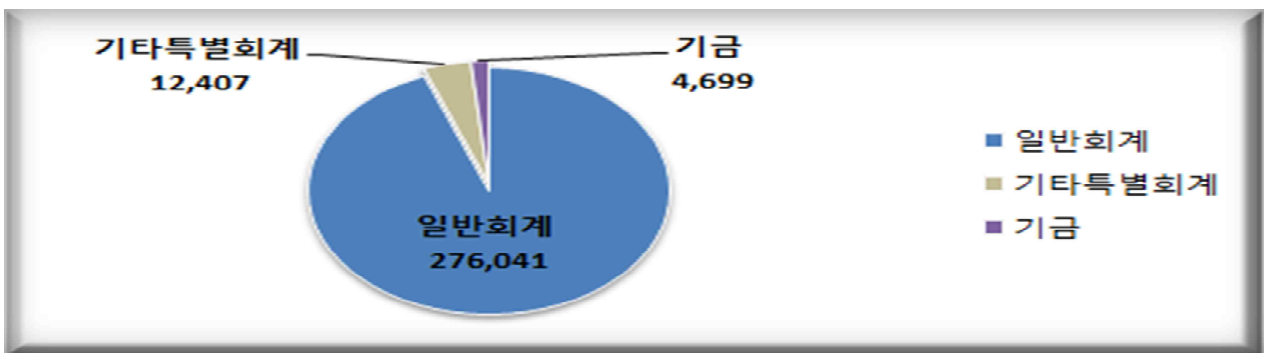
- 1년 동안 진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93,147	276,041	12,407	4,69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 출 예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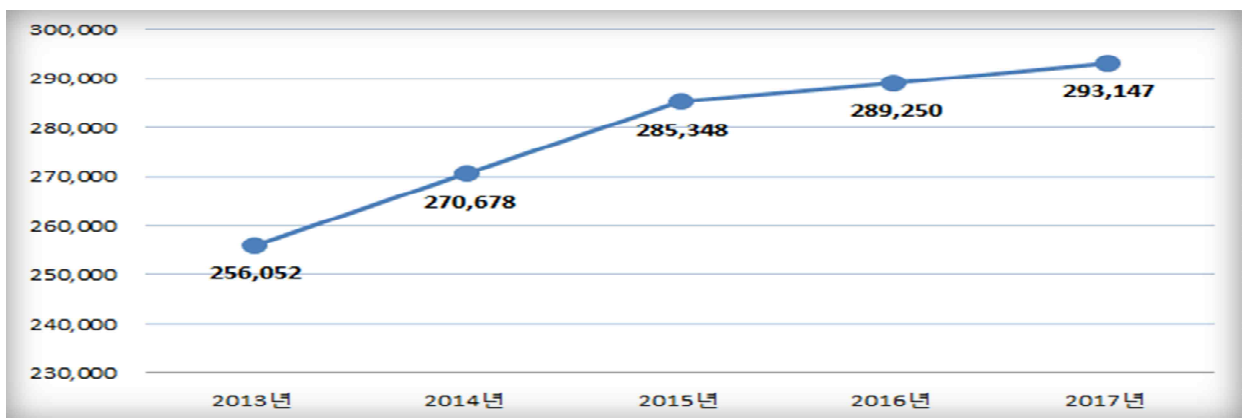
-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56,052	270,678	285,348	289,250	293,14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 예산액 연도별 추이



-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8,537	100	254,733	100	271,468	100	271,886	100	276,041	100
일반공공행정	21,679	9.09	22,773	8.94	20,174	7.43	24,163	8.89	25,340	9.18
공공질서 및 안전	3,066	1.29	449	0.18	1,868	0.69	4,123	1.52	2,257	0.82
교육	1,966	0.82	2,723	1.07	2,188	0.81	1,151	0.42	1,367	0.50
문화 및 관광	18,273	7.66	20,483	8.04	16,670	6.14	16,710	6.15	15,748	5.71
환경 보호	14,722	6.17	13,125	5.15	25,075	9.24	28,038	10.31	14,620	5.30
사회 복지	35,808	15.01	39,682	15.58	49,692	18.30	51,227	18.84	53,662	19.44
보건	4,060	1.70	3,898	1.53	3,888	1.43	4,150	1.53	4,370	1.58
농림해양수산	68,236	28.61	82,717	32.47	86,064	31.70	59,801	21.99	72,469	26.25
산업·중소기업	4,182	1.75	3,412	1.34	3,116	1.15	5,159	1.90	5,002	1.81
수송 및 교통	6,175	2.59	2,482	0.97	2,166	0.80	5,518	2.03	5,040	1.83
국토 및 지역개발	23,806	9.98	23,494	9.22	16,112	5.94	19,891	7.32	22,230	8.0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474	1.04	2,550	1.00	2,550	0.94	2,550	0.94	2,450	0.89
기타	34,090	14.29	36,944	14.50	41,905	15.44	49,406	18.17	51,487	18.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진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69,203	380,747	388,155	400,445	408,487	1,947,038	2.60%
자 체 수 입	24,316	24,898	25,412	24,854	26,005	125,485	1.70%
이 전 수 입	310,421	320,471	326,644	338,894	346,292	1,642,723	2.8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466	35,378	36,099	36,697	36,190	178,830	1.20%
세 출	369,203	380,747	388,155	400,445	408,487	1,947,038	2.60%
경 상 지 출	64,370	66,654	68,723	71,293	71,122	342,162	2.50%
사 업 수 요	304,833	314,093	319,432	329,152	337,365	1,604,876	2.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진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292,792	293,347	555	0.19
진도군	289,250	293,147	3,897	1.35
출자·출연기관	3,542	200	△3,342	△94.3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출자출연기관(2개) :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진도청정푸드밸리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www.jindo.go.kr/정부3.0정보공개/재정공시/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진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4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45% (6.48%)	276,041 (276,041)	34,366 (17,878)	241,675	0	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진도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1.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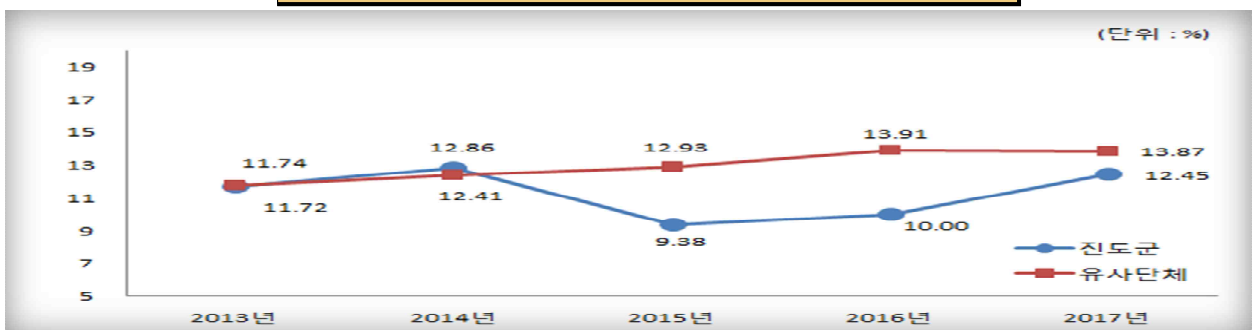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1.74% (4.57%)	344,056 (344,056)	40,380 (15,720)	303,676	0	0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1.72	12.86	9.38 (4.59)	10.00 (4.84)	12.45 (6.48)
최종예산	14.40	11.56	15.04 (5.23)	11.74 (4.57)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유사자치단체(21개군)의 평균자립도 13.87%보다 1.42% 낮은 12.45%로 국가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진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2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4.25% (58.28)	276,041 (276,041)	177,366 (160,879)	98,675	0	0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 2016년도 우리 진도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59.0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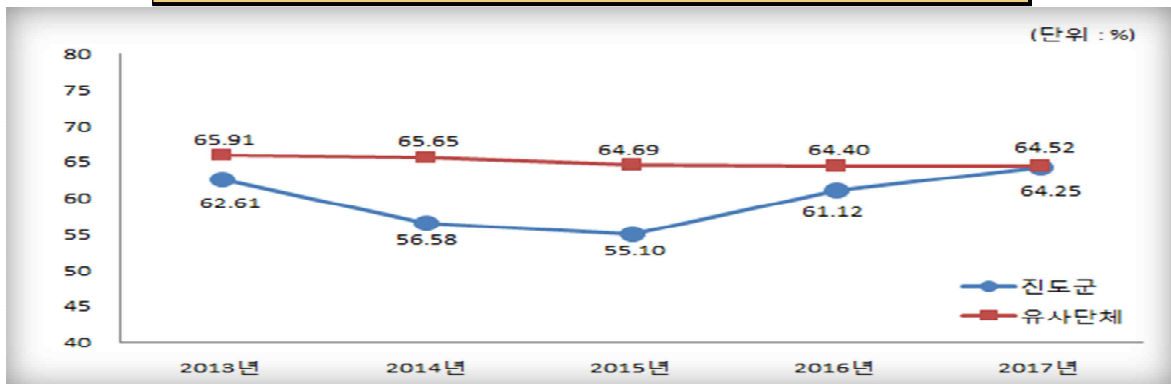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9.04% (51.88%)	344,056 (344,056)	203,146 (178,486)	140,910	0	0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2.61	56.58	55.10 (50.31)	61.12 (55.96)	64.25 (58.28)
최종예산	62.29	55.96	59.60 (49.80)	59.04 (51.88)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재정자주도는 작년보다 3.13% 높아져 유사단체과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진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61,663	277,347	73	150	78	17,350	277,424	△15,761	1,588
일반회계	259,554	265,624	0	0	0	16,487	265,624	△6,070	10,417
기타 특별회계	2,044	11,599	73	150	78	863	11,677	△9,633	△8,77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66	124	0	0	0	0	124	△58	△58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용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용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4,214	△18,164	△10,668	△13,496	△15,761
통합재정수지 2	841	1,683	2,682	1,452	1,588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진도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21,986	339,473	57	50	△7	23,126	339,466	△17,480	5,646
일반회계	319,396	325,976	0	0	0	20,561	325,976	△6,580	13,981
기타 특별회계	2,225	12,587	57	50	△7	2,565	12,580	△10,355	△7,79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365	909	0	0	0	0	909	△544	△544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6,397	△22,539	△7,060	△24,550	△17,480
통합재정수지 2	931	4,217	10,031	4,862	5,646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도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90	85,958
여성정책추진사업	82	23,44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5	53,07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3	9,436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www.jindo.go.kr/정부3.0정보공개/재정공시/성인지예산현황>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진도군은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76,041	20	2

▶ 20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0	
녹색산업과	접도 여미주차장 공중화장실 관정 개발	2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www.jindo.go.kr/정부3.0정보공개/재정공시/주민참여예산현황>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진도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116	208	238	196,263	284,924	-88,662
기획조정실	1	3	3	8	6,715	8,270	-1,555
투자마케팅과	1	7	7	8	4,010	2,920	1,091
지역개발과	1	5	8	8	6,179	12,793	-6,614
안전건설과	1	13	18	24	19,684	27,837	-8,154
행정과	1	8	13	19	53,883	51,014	2,868
관광문화과	1	9	16	14	9,864	12,366	-2,502
농업지원과	1	8	28	13	11,040	11,612	-571
수산지원과	1	4	11	14	7,339	20,702	-13,363
주민복지과	1	11	17	27	7,330	50,379	-43,048
세무회계과	1	5	5	10	2,418	2,007	410
민원봉사과	1	5	8	7	1,637	1,528	109
녹색산업과	1	8	15	17	5,492	8,213	-2,721
세월호사고수습지원과	1	1	2	1	352	176	176
의회사무과	1	1	4	0	654	653	0
보건소	1	6	13	16	3,220	4,913	-1,693
농업기술센터	1	7	17	22	5,455	3,781	1,675
경제활력사업소	1	4	6	8	4,945	8,003	-3,058
상하수도사업소	1	3	5	7	25,943	43,030	-17,087
진도개사업소	1	3	7	6	1,217	1,457	-239
시설관리사업소	1	3	3	6	1,966	1,737	229
진도항개발사업소	1	2	2	3	10,159	6,260	3,899
진도읍	0	0	0	0	1,149	783	366
군내면	0	0	0	0	636	475	161
고군면	0	0	0	0	567	469	98
의신면	0	0	0	0	823	545	278
임회면	0	0	0	0	569	516	53
지산면	0	0	0	0	686	477	209
조도면	0	0	0	0	2,329	2,008	322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www.jindo.go.kr/정부3.0정보공개/재정공시/성과계획서>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45	64.25	19.44	22.06	55.41	213.05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http://www.jindo.go.kr/정부3.0정보공개/재정공시/재정운용상황개요서>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800	47,520	△5,280
	부단체장	36,300	32,670	△3,63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4,067	214,054	△20,01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9,600	39,60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4,160	44,160	0
	의원국외여비	17,500	17,500	0
지방보조금		13,978,102	12,464,591	△1,513,51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02,950	0
공무원 일·숙직비		50	50	0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1,340	△ 2,568
인건비 절감	12	102
지방의회경비 절감	39	17
업무추진비 절감	82	4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64	26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73	△ 3,302
지방청사 관리·운영	370	301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 504	△ 1,101
지방세 징수율 제고	△ 5	△ 296
지방세 체납액 축소	△ 113	△ 480
경상세외수입 확충	208	31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453	△ 557
탄력세율 적용	△ 141	△ 82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진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홈페이지 :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계/지방교부세 감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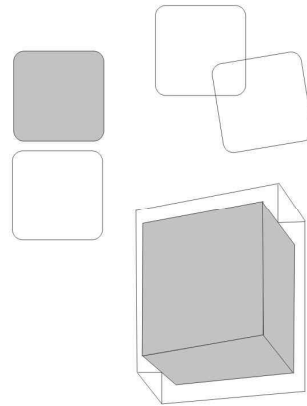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6년에 우리 진도군이 행자부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홈페이지 :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계/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V. 기타 공시사항



제1절 기타 공시사항

- | | |
|---------------------|----|
| 1. 기금 성과분석결과 | 33 |
| 2. 재정분석 결과 | 34 |
| 3. 통합무채현황 | 36 |
| 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46 |

1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 ▷ 우리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	-	104		
분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	-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	-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	-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	-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	-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	-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2 재정분석 결과

(단위 : %)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자체 평균
I.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92	5.73	3.63
	2. 실질수지비율	14.26	15.42	18.14
	3. 경상수지비율	65.92	68.34	66.48
	4. 관리채무비율	3.83	10.98	2.63
	5. 실질채무비율(광역)	해당없음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9.63	59.73	24.53
	7. 통합유동부채비율	3.72	27.97	8.94
	8. 공기업부채비율	0.00	65.07	18.07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1.85	-2.14
II.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3.23	29.59	7.81
	10-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9.00	4.33	5.33
	11. 지방세징수율	93.98	97.22	94.38
	1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6	0.9992	0.9933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8	1.99	0.62
	1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55.73	29.40	41.36
	13. 경상세외수입비율	0.57	1.83	1.24
	13-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9.24	5.70	8.33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42	1.33	0.67
	14-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1.86	7.79	13.10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01	1.0010	1.0032
	16. 지방보조금비율	14.21	7.86	12.10
	16-1. 지방보조금증감률	22.98	0.29	-1.31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60	2.65	1.88
	17-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5.94	19.34	200.51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9.11	5.08	5.87
	18-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5.35	4.05	13.03
	19. 인건비절감노력도	0.0497	0.0157	0.0391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1733	0.0827	0.1558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1223	0.1900	0.0941
	22. 행사축제경비비율	0.68	0.44	1.08
	22-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13.83	6.28	12.85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5.40	-7.16	3.28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text{세입} - \text{지출 및 순융자}) / \text{통합재정규모}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text{실질수지액} / \text{일반재원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text{경상비용} / \text{경상수익}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text{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text{관리채무} - \text{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text{부채총계} / \text{환금자산}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text{유동부채} / \text{유동자산}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text{부채총액} / \text{자기자본}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산대비영업이익률	$\text{영업이익} / \text{총자산}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text{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 \text{실제수납액} / \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text{지방세실제수납액} / \text{지방세징수결정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text{지방세체납누계액} / \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text{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text{세외수입체납누계액} / \text{세입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text{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text{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 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text{지방보조금결산액}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text{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text{자본시설유지비용} / \text{유형고형자산} \times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 - (\text{인건비 결산액} / \text{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비율(증감률)	$1 - (\text{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text{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 - (\text{업무추진비 결산액} / \text{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text{행사축제경비} / \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 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text{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text{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text{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3 통합부채현황 분석('16~'20)

3-1.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 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6,380	17,129
통합부채	280	257
1. 유동부채	60	48
· 이자부금융부채	14	10
· 기타금융부채	32	28
· 비금융부채	14	1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부채)	186	170
3. 기타비유동부채	34	39
· 기타금융부채	0	1
· 비금융부채	34	38
통합자본	16,100	16,872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3-2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 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금액	상대 거래기관	내부거래 내 용
해	당	없	음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해당없음

3-3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 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6,380	17,129
통합부채	280	257
1. 유동부채	60	48
· 이자부금융부채	14	10
· 기타금융부채	32	28
· 비금융부채	14	1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부채)	186	170
3. 기타비유동부채	34	39
· 기타금융부채	0	1
· 비금융부채	34	38
통합자본	16,100	16,872

3-4.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 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 자치단체	지방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 약 상 약 정	소 계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 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우발부채)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 자	총사업 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 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발생금액 (실지급액)			
OO 출자출연기관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3-5.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180	12	11	25	25	108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166	8	8	25	25	101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주)진도청정푸드벨리 (내부거래)	14	4	3			7
비율	100	6.43	5.98	13.86	13.86	59.87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 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80						
진도군	계	166						
수요자 부담	1991.11.06	0.66	증서차입	0.5	2026	가사도 내연발전소	부	산업은행
	1991.12.16	0.57	증서차입	0.5	2027	서거차 내연발전소	”	산업은행
	1993.12.16	0.16	매출공채	0.5	2028	동서거차 전화사업	”	산업은행
	1996.12.13	0.26	증서차입	0.5	2031	맹골도 내연발전소	”	산업은행
국비 지원	1998~2002 (12회발행)	11.43	증서차입	1.4	2017	진도읍 하수종말 처리장	”	지방재정 공제회
순 지방채	2011~2012 (2회발행)	58	증서차입	3.0	2026	군내 농공단지 조성	여	전라남도
	2014.08.18	94.8	증서차입	3.0	2022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고금리지방 채 차환자금	여	전라남도
출연기관	계	14					”	
(주) 진도청정 푸드벨리	2015.11.30.	7	금융기관	0%	2020	대파브랜드 육성	”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2014.03.31.	2	금융기관	1%	2016	대파브랜드 육성	”	NH농협중앙회
	2014.12.18.	2	금융기관	3%	2016	대파브랜드 육성	”	NH농협중앙회
	2014.04.29.	3	금융기관	1%	2017	대파브랜드 육성	”	NH농협중앙회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합 계	180		5			
진도군(계)	166		4.868		부	
수요자 부담	0.66	0.5	0.004	산업은행	"	
	0.57	0.5	0.003	산업은행	"	
	0.16	0.5	0.0008	산업은행	"	
	0.26	0.5	0.001	산업은행	"	
국비 지원	11.43	1.4	0.18	지방재정공 제회	"	
순 지방채	58	3.0	1.74	전라남도	여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94.8	3.0	2.94	전라남도	여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출연기관(계)	14		0.108		부	
(주) 진도청정 푸드밸리	7	0	0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	"	
	2	1	0.018	NH농협 중앙회	"	
	2	3	0.06	NH농협 중앙회	"	
	3	1	0.03	NH농협 중앙회	"	

* '14년도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에 대해 작성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준공 후 5년 초과 여부(O, X)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 인분류**
계					180	443	①, ② 들 중 한 개 로 구 분
진도군	진도읍 하수종말 처리장	1998 ~ 2017		O	11	213	①
진도군	가사도 내연발전소	1991 ~ 2026		O	1	25	①
진도군	서거차 내연발전소	1993 ~ 2027		O	1	25	①
진도군	맹골도 내연발전소	1996 ~ 2031		O	0	25	①
진도군	동,서거차 전화사업	1993 ~ 2028		O	0	25	①
진도군	'09년도 지방교부 세감액분	2009 ~ 2024		X	95	-	①
진도군	군내 농공단지 조성	2010 ~ 2015	2015	X	58	117	②
(주) 진도청정 푸드밸리	원예 브랜드 육성	2009 ~ 추진중	2012	O	14	14	②

* ①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자치단체 일반유형자산 포함)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②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유형자산 포함)으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		
				인재육성 장학회		청정 푸드벨리
합계	4,433	4,328		97	7.29	
①경상수입	252	244				
· 지방세	81	81				
· 세외수입	164	164				
· 매출액 등	7				7.2	출연, 출자 판매수입
②이전수입	2,716	2,716		97		출연금
③자본수입	1	1				
④기타	1,464	1,367			0.09	영업외 수익

※ 작성방법

-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3-6.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
 - 해당없음
- ②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3-6.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 관	외부거래 내용
진도군	장기차입금	153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고금리 지방채 차환 : 9,481백만원 군내 농공단지 조성사업 : 5,800백만원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 관	외부거래 내 용
진도군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붙임 1

통합부채상태표 상세

□ **내부거래제거 전 통합부채 상태표**

(단위: 억원)

구 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17,129	17,015	0	114	0
· 유동자산	1,282	1,214	0	68	0
· 투자자산	108	78	0	30	0
· 일반유형자산	943	927	0	15	0
· 주민편의시설	2,266	2,266	0	0	0
· 사회기반시설	12,515	12,515	0	0	0
· 기타비유동자산	14	14	0	0	0
부채	257	242	0	15	0
1. 유동부채	48	46	0	2	0
· 금융	37	35	0	2	0
· 비금융	10	10	0	0	0
2. 장기차입부채(금융)	170	158	0	12	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39	39	0	0	0
자본	16,872	16,773	0	99	0
우발부채(억원)	0	0	0	0	0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 상태표

(단위: 억원)

구 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17,129	17,015	0	114	0
· 유동자산	1,282	1,214	0	68	0
· 투자자산	108	78	0	30	0
· 일반유형자산	943	927	0	15	0
· 주민편의시설	2,266	2,266	0	0	0
· 사회기반시설	12,515	12,515	0	0	0
· 기타비유동자산	14	14	0	0	0
부채	257	242	0	15	0
1. 유동부채	48	46	0	2	0
· 금융	37	35	0	2	0
· 비금융	10	10	0	0	0
2. 장기차입부채(금융)	170	158	0	12	0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39	39	0	0	0
자본	16,872	16,773	0	99	0
우발부채(억원)	0	0	0	0	0

4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4-1.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 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통합부채 계		257	242.5		14.5	252	239.5	12.5	
유동	이자부금융	10	8		2	10	8	2	
	기타금융	27.5	27.5			27.5	27.5		
	비금융	10	10			10	10		
비유동	이자부금융	170	158		12	168	158	10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38.5	38		0.5	35.5	35	0.5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통합부채 계		257	242.5		14.5	252	239.5	12.5	
유동	이자부금융	10	8		2	10	8	2	
	기타금융	27.5	27.5			27.5	27.5		
	비금융	10	10			10	10		
비유동	이자부금융	170	158		12	168	158	10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38.5	38		0.5	35.5	35	0.5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 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 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4-2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부채상환계획(지자체), 출자출연(부채비율 200% 초과)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165.8	165.8	146	114	82	39
① 자치단체	152	152	135	105	75	35
③ 출자·출연기관	13.8	13.8	11	9	7	4

※ 자치단체 순지방채 및 청정푸드밸리 출자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	19.8	32	32	43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19.8	32	32	43
'09년 교부세 감액관련 차입금	94	80	60	40	10
군내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58	55	45	35	25
(주)진도 청정푸드밸리	13.8	11	9	7	4

- '09년 교부세 감액 : 조기상환 추진으로 연차적 감액
- 군내 농공단지 조성사업 : 조기상환 추진으로 연차적 감액
- (주)진도 청정푸드밸리 : 연차적 감액추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31	31	28	25	22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31	31	28	25	22
퇴직금 중간정산 차입금	31	31	28	25	22

4-3 우발부채('16~'20)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단위: 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 상 약 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 53
-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56
- 별첨 3.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 59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 (2016년 12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전 국	51,696,216	북 구	310,202	대전광역시	1,514,370
서울특별시	9,930,616	해운대구	419,853	동 구	234,959
종로구	152,737	사하구	334,603	중 구	252,490
중 구	125,249	금정구	244,624	서 구	491,011
용산구	230,241	강서구	108,909	유성구	343,222
성동구	299,259	연제구	207,268	대덕구	192,688
광진구	357,215	수영구	179,324	울산광역시	1,172,304
동대문구	355,069	사상구	232,800	중 구	242,536
중랑구	411,005	기장군	158,527	남 구	340,714
성북구	450,355	대구광역시	2,484,557	동 구	174,514
강북구	327,195	중 구	79,712	북 구	195,285
도봉구	348,220	동 구	351,352	울주군	219,255
노원구	567,581	서 구	199,507	세종특별자치시	243,048
은평구	491,476	남 구	156,433	경기도	12,716,780
서대문구	314,194	북 구	440,383	수원시	1,194,041
마포구	379,892	수성구	447,011	성남시	974,580
양천구	477,739	달서구	591,891	의정부시	438,457
강서구	595,485	달성군	218,268	안양시	597,414
구로구	417,551	인천광역시	2,943,069	부천시	851,380
금천구	235,386	중 구	115,249	광명시	339,484
영등포구	370,613	동 구	71,014	평택시	470,832
동작구	400,997	남 구	417,103	동두천시	98,277
관악구	506,851	연수구	328,627	안산시	689,859
서초구	447,192	남동구	530,982	고양시	1,039,684
강남구	567,115	부평구	549,716	과천시	63,778
송파구	657,831	계양구	330,284	구리시	193,763
강동구	444,168	서 구	510,733	남양주시	662,154
부산광역시	3,498,529	강화군	68,010	오산시	208,656
중 구	45,208	옹진군	21,351	시흥시	402,888
서 구	112,973	광주광역시	1,469,214	군포시	284,890
동 구	89,826	동 구	95,791	의왕시	156,763
영도구	126,362	서 구	309,579	하남시	211,101
부산진구	376,526	남 구	219,729	용인시	991,126
동래구	272,745	북 구	441,066	파주시	430,781
남 구	278,779	광산구	403,049	이천시	210,359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안성시	182,896	증평군	37,308	전라남도	1,903,914
김포시	363,443	진천군	69,950	목포시	237,739
화성시	640,890	괴산군	38,973	여주시	288,988
광주시	327,723	음성군	97,787	순천시	278,548
양주시	205,513	단양군	30,503	나주시	104,376
포천시	154,763	충청남도	2,096,727	광양시	155,580
여주시	111,563	천안시	617,955	담양군	47,229
연천군	45,907	공주시	109,931	곡성군	30,400
가평군	62,448	보령시	103,873	구례군	27,412
양평군	111,367	아산시	302,929	고흥군	67,656
강원도	1,550,806	서산시	170,788	보성군	44,469
춘천시	280,707	논산시	123,213	화순군	65,303
원주시	337,979	계룡시	42,634	장흥군	40,669
강릉시	213,846	당진시	166,630	강진군	37,753
동해시	93,297	금산군	54,612	해남군	75,121
태백시	47,070	부여군	70,187	영암군	57,045
속초시	81,793	서천군	56,012	무안군	82,109
삼척시	69,599	청양군	32,753	함평군	34,397
홍천군	70,076	홍성군	99,971	영광군	55,618
횡성군	45,991	예산군	81,339	장성군	46,104
영월군	40,073	태안군	63,900	완도군	52,668
평창군	43,318	전라북도	1,864,791	진도군	32,078
정선군	38,718	전주시	651,744	신안군	42,652
철원군	48,013	군산시	277,551	경상북도	2,700,398
화천군	26,264	익산시	300,479	포항시	516,775
양구군	24,010	정읍시	115,173	경주시	259,452
인제군	32,720	남원시	84,188	김천시	142,256
고성군	30,114	김제시	87,782	안동시	168,798
양양군	27,218	완주군	95,480	구미시	419,891
충청북도	1,591,625	진안군	26,069	영주시	109,247
청주시	835,197	무주군	24,949	영천시	100,521
충주시	208,350	장수군	23,628	상주시	101,799
제천시	136,517	임실군	30,197	문경시	74,702
보은군	34,221	순창군	29,949	경산시	258,037
옥천군	52,267	고창군	60,597	군위군	24,171
영동군	50,552	부안군	57,005	의성군	54,014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청송군	26,301	경상남도	3,373,871	창녕군	63,982
영양군	17,713	창원시	1,063,907	고성군	54,703
영덕군	39,052	진주시	346,739	남해군	45,129
청도군	43,564	통영시	138,160	하동군	49,622
고령군	34,257	사천시	114,912	산청군	36,098
성주군	45,205	김해시	529,422	함양군	40,241
칠곡군	123,199	밀양시	108,354	거창군	63,308
예천군	46,166	거제시	257,183	합천군	48,026
봉화군	33,539	양산시	317,037	제주특별자치도	641,597
울진군	51,738	의령군	28,111		
울릉군	10,001	함안군	68,937		

※ 본 인구통계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i.go.kr) ‘주민등록인구 통계 → 연간현황’의 총인구수 ('16.12월말 기준)

※ 50만 이상 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15개)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제7기 지방의회)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국	3,692	동래구	12	동 구	8
서울특별시	525	남 구	15	서 구	13
본 청	106	북 구	13	남 구	11
종로구	11	해운대구	17	북 구	20
중 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6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5
성동구	14	강서구	7	본 청	22
광진구	14	연제구	10	동 구	11
동대문구	18	수영구	8	중 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2	서 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8	유성구	11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46	대덕구	9
도봉구	14	본 청	30	울산광역시	72
노원구	21	중 구	7	본 청	22
은평구	19	동 구	16	중 구	11
서대문구	15	서 구	12	남 구	14
마포구	18	남 구	9	동 구	8
양천구	18	북 구	20	북 구	7
강서구	20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5
금천구	10	달성군	8	경기도	559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1	본 청	128
동작구	17	본 청	35	수원시	34
관악구	22	중 구	7	성남시	34
서초구	15	동 구	7	의정부시	13
강남구	21	남 구	16	안양시	22
송파구	26	연수구	10	부천시	28
강동구	18	남동구	16	광명시	13
부산광역시	229	부평구	19	평택시	16
본 청	47	계양구	11	동두천시	7
중 구	7	서 구	16	안산시	21
서 구	9	강화군	7	고양시	31
동 구	8	옹진군	7	과천시	7
영도구	9	광주광역시	90	구리시	7
부산진구	19	본 청	22	남양주시	16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오산시	7	고성군	7	익산시	25
시흥시	12	양양군	7	정읍시	17
군포시	9	충청북도	162	남원시	16
의왕시	7	본 청	31	김제시	14
하남시	7	청주시	38	완주군	10
용인시	27	충주시	19	진안군	7
파주시	14	제천시	13	무주군	7
이천시	9	보은군	8	장수군	7
안성시	9	옥천군	8	임실군	8
김포시	10	영동군	8	순창군	8
화성시	18	진천군	7	고창군	10
광주시	9	괴산군	8	부안군	10
양주시	8	음성군	8	전라남도	301
포천시	8	단양군	7	본 청	58
여주시	7	증평군	7	목포시	22
연천군	7	충청남도	209	여수시	26
가평군	7	본 청	40	순천시	24
양평군	7	천안시	22	나주시	14
강원도	213	공주시	11	광양시	13
본 청	44	보령시	12	담양군	9
춘천시	21	아산시	15	곡성군	7
원주시	22	서산시	13	구례군	7
강릉시	18	논산시	12	고흥군	12
동해시	8	계룡시	7	보성군	8
태백시	7	당진시	12	화순군	10
속초시	7	금산군	8	장흥군	7
삼척시	8	부여군	11	강진군	8
홍천군	8	서천군	9	해남군	11
횡성군	7	청양군	8	영암군	8
영월군	7	홍성군	10	무안군	8
평창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정선군	7	태안군	8	영광군	8
철원군	7	전라북도	235	장성군	8
화천군	7	본 청	38	완도군	9
양구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
인제군	7	군산시	24	신안군	10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경상북도	344	영덕군	7	밀양시	13
본 청	60	청도군	7	거제시	16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6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1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1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10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1
상주시	17	경상남도	315	산청군	10
문경시	10	본 청	55	함양군	10
경산시	15	창원시	43	거창군	11
군위군	7	진주시	20	합천군	11
의성군	13	통영시	13	제주특별자치도	41
청송군	7	사천시	12		
영양군	7	김해시	22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별첨 3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남 (신)창원시	경기 부천시 충북 (신)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성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익산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시-(3) 19개	경기 군포시 경기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목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충남 보령시 경북 김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안동시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충남 논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구리시 강원 삼척시 충남 당진시
	시-(4) 20개	경기 의왕시 강원 속초시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경기 과천시 충남 계룡시 전남 광양시 경남 통영시	강원 동해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경북 영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인천 강화군 충북 음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무안군	인천 옹진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군-(2) 20개	경기 가평군 충북 진천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경기 연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울진군	강원 평창군 충남 금산군 전남 영암군 경남 창녕군	강원 정선군 충남 서천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영동군 충남 태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함천군
	군-(3)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전북 임실군 경북 청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양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성주군	강원 철원군 충북 보은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예천군	강원 양구군 충북 옥천군 전남 영광군 경남 하동군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 전남 장성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강원 화천군 전북 장수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충북 단양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충남 청양군 전남 구례군 경북 청송군 경북 울릉군	전북 진안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자치구	구-(1) 13개	서울 중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북구 서울 양천구 서울 송파구	서울 도봉구 서울 강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구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초구
	구-(2) 12개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금천구	서울 광진구 서울 영등포구
	구-(3) 22개	부산 진구 부산 사상구 인천 중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서구
	구-(4) 22개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울산 북구	부산 동구 부산 연제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부산 영도구 부산 수영구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부산 동래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 2016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 63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p> <p>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p> <p>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p> <p>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p> <p>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p> <p>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p> <p>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p> <p>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p> <p>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p> <p>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p>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p> <p>④ 삭제</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p> <p>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p> <p>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p> <p>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p> <p>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p> <p>가. 교부현황</p> <p>나. 성과평가 결과</p> <p>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p> <p>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p> <p>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p>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p>	<p>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 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p> <p>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거 및 관리계획</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용어 해설

- 색인 및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73

색 인

- 가용재원 (可用財源)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 결산 (決算)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 공유재산 (公有財產)
- 국고보조 (國庫補助)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 국세 (國稅)
- 금고 (金庫)
- 기금 (基金)
- 기본경비 (基本經費)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 목적세 (目的稅)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 보증채무부담행위 (保證債務負擔行爲)
- 보통세 (普通稅)
- 부담금 (負擔金)
- 부채 (負債)
- 불용액 (不用額)
- 비용 (費用)
- 사고이월 (事故移越)
- 사업예산제도 (事業豫算制度)
- 성과주의 예산제도 (成果主義 豫算制度)
-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 수익 (收益)
-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 세외수입 (稅外收入)
- 세입 (歲入)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 세출 (歲出)
- 수의계약 (隨意契約)
- 순계예산 (純計豫算)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 예비비 (豫備費)
- 예산 (豫算, budget)
- 예산과목 (豫算科目)
-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
- 여성정책추진사업 (女性政策推進事業)
- 인건비 (人件費)
- 예산대비 채무비율 (豫算對比 債務比率)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 의존수입 (依存收入)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 일반회계 (一般會計)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 잉여금 (剩餘金)
- 자본지출 (資本支出)
- 자산 (資產)
- 자체수입 (自體收入)
-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 재정분석 (財政分析)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 재정진단 (財政診斷)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 지방세 (地方稅)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 채권 (債權)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率)
- 총계예산 (總計豫算)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 출연금 (出捐金)
- 출자금 (出資金)
- 최저임수입보장(MRG)
- 통합재정수지 (統合財政收支)
-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 특별회계 (特別會計)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 회계 (會計)
- 회계연도 (會計年度)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 - Transfer - 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이는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에 의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 불용액(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불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text{불용액} = \text{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text{당해연도 지출액} - \text{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과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 (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 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용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 잡종금 등)등이 있음

●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 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여성정책추진사업 (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증진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 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text{예산대비 채무비율} = \text{지방채무 총규모} / \text{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text{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text{지방채무 잔액} + \text{채무부담행위 잔액} + \text{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text{예산규모} = \text{일반회계} + \text{기타특별회계} + \text{공기업특별회계}$$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 (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 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 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text{재정자립도} = \frac{\text{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가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 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 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용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text{채무상환비율} = \frac{\text{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text{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times 100$$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채무부담상환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경상적세외수입+조정교부금+부동산교부세

●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i) 지출원의 정산지출 ii)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iii)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 **출연금 (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자금 (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 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 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투자사업 심사(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 각국의 회계연도

-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 3월~익년 2월말 : 터키
-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지방재정공시 표준화면 가이드

- 공시접근성 강화 105
- 화면구성 등 107

1 공시접근성 강화

-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링크, 재정공시 메뉴접근 단계 최소화
 - ▶ 재정공시 바로가기 링크 등 지역주민 및 수요자 접근성 강화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링크 제공

대한민국 Jindo 진도군

관광문화 | 열린군수실 | 군의회 | global ▼

로그인

접근성 강화

전자민원 | 진도소개 | 군정소식 | 참여마당 | 정부3.0 정보공개 | 분야별정보 | 사이트맵 | **검색**

7.129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17. 4. 26.(수) ~ 4. 29.(토) 4일간

진도10선
생생하게 즐기는
진도360VR

안녕하십니까
이동진입니다
공약과비전 go
주간일정계획 go

진도가는날/토요일
진도 민속여행

우리 동네
세금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제 39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17.4.26(수) ~ 4.29(토) / 4일간 / 전남 진도군 고군면 최동리 일원

공저사항 | 고시공고 | 입법예고 | 반상회소식 | 관련기관공지

- 17년도 농촌지도사업 수도자분기 시범사업 추가 공고 안내 2017-02-24
- 2017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신청 안내 2017-02-24
- 진도군 홈페이지 서버점검을 위한 서비스 일시 중단안내 2017-02-23
- 2017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 안내 2017-02-23
- 공공비축미 배입 초과자금액 환급 안내 2017-02-23

진도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
현재 3,191 명 기탁

거주참여
기탁환출

청정지역 진도
대표특산물

진도 소개 go

보건소 go

농업기술
센터 go

윤림
삼별초공원 go

발전하는진도

진도 대명 해양리조트(역신면 송군리 일원) go

바로가기 기능

진도군 자주찾는 서비스

- 조직도
- 청사안내
- 예산현황**
- 계약정보공개
- 자유계시판
- 숙박
- 음식
- 교통
- 재래시장
- 관광지도
- 철도도서관
- 진도관광협의회
- 자치법규

☞ 메뉴접근 단계 최소화 : HOME > 재정공시 (1단계)

관광문화	열린군수실	군의회	global	대한민국 인속문화예술특구 Jindo 진도군	로그인	f	t	B
전자민원	진도소개	군정소식	참여마당	정부3.0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사이트맵	검색	
정보공개	재정현황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실명제	행정규제개혁	지방공기업			
정보공개개요	예산현황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실명제	행정규제개혁개요	지방공기업이란			
사전정보공개	재정공시			행정규제등록서	지방공기업 현황			
정보공개편람	재정공시			행정규제신고센터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정보공개청구	재정공시							
정보공개목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공시설 운영현황							
	재정용이사전							

<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시간급 6470원

공지사항	고시공고	입법예고	반상회소식	관련기관공지	+
· `17년도 농촌지도사업 수도적분아 시범사업 추가 공고 안내	2017-02-24				
· 2017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신청 안내	2017-02-24				
· 진도군 홈페이지 서버점검을 위한 서비스 일시 중단안내	2017-02-23				
· 2017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 안내	2017-02-23				
· 공공비축미 매입 초과자금에 환급 안내	2017-02-23				

>

진도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
기탁참여
현재 3,191명 기탁
기탁현황

청정지역 진도
대표특산물

진도 민속여행

마을세무사!

진도 민속여행

진도 소개

보건소

발전하는 진도

농업기술 센터

윤림 상벌초공원

진도 대명 해양리조트(익신면 송군리 일원)

- 진도군 자주찾는 서비스
- 
 조지도
 - 
 청사안내
 - 
 예산현황
 - 
 계약정보공개
 - 
 자유계사판
 - 
 숙박
 - 
 음식
 - 
 교통
 - 
 재래시장
 - 
 관광지도
 - 
 철마도서관
 - 
 진도관광협의회
 - 
 자치법규

2 화면구성 및 주민소통 원활화

- 연도별, 공시기준 및 분류별로 화면을 구성하고, 홈페이지에서 재정공시 내용을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현하여 재정정보의 비교분석 및 전달성 제고

연도별, 공시기준 및 분류별로 화면을 구성하여 한눈에 보기 용이함

유사단체 자료검색(재정 365)

표현방식

재정공시	다문로드
2016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2016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2015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2015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수정공시)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2015년 결산기준 재정공시(특수공시포함)	PDF 다운로드 ↓
2015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PDF 다운로드 ↓
2014년 재정공시	PDF 다운로드 ↓
2013년 재정공시	PDF 다운로드 ↓

재정공시	다문로드
○ 2016년도 전도군 지방재정공시(총결산명)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 공통공시 총결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 홈페이지에 주민소통을 위한 메뉴 마련



대한민국 Jindo 진도군
인속문화 예술특구

관광문화 | 열린군수실 | 군의회 | global v
로그인    

전자민원
진도소개
군정소식
참여마당
정부3.0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사이트맵
검색

🏠
정부3.0 정보공개
재정현황
▼ 예산현황 ▼

예산현황

예산서공개

주민소통
 2017 예산편성에 바란다

☰ 회계연도 / 종류 선택하기

선택하세요 ▼

이동

▶ 2017 본예산



연도	예산총액 (천원)
2011년	2,338
2012년	2,454
2013년	2,515
2014년	2,657
2015년	2,810
2016년	2,849
2017년	2,884



단위 (천원)

총괄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세출예산내역서		
회계별예산규모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경제활력사업소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
기능별 세출총괄표 (일반)		관광문화과		세출

2017년 진도군 재정공시 [예산]

인 쇄 2017년 2월

발 행 2017년 2월

발행처 진도군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Tel. 061) 540-3025

Fax. 061) 540-3096
